

식중독 의심사고 최종보고(토암골옛날막창)

2015. 12. 30. (수) 17:00경 성북구 종암로21길 17-2(종암동) 소재 토암골옛날막창에서 2명이 막창, 명이나물, 맥주를 섭취 후 2명이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사고에 따른 역학조사 후 최종결과 보고.

I 발생개요

- 발생일시 : 2016. 12. 30.(수) 17:00경
- 최초신고 : 2016. 12. 31.(목) 14:00경
- 발생장소 : 환자자택
- 발생규모 : 취식자(2명), 유증상자(2명)
- 주요증상 : 구토, 설사, 메스꺼움등

II 조지사항

- 원인조사반(보건위생과)
 - 당일 취식 후 남아있는 음식 및 환자가 취식한 동일조건 조리식품(막창, 명이나물) 2건 채취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환경조사 실시 : 조리종사자 위생상태, 손 화농성질환 유무, 주방위생상태 점검
 - 기타사항 : 영업주 및 조리종사자 식중독 예방 및 위생교육, 노로바이러스 예방홍보물 배포
- 역학조사반(건강관리과)
 - 채변검사 및 사례조사
 - 채변검사 : 2명(환자 2명), 2명(조리종사자)에 대한 인체검체 총 4건 채취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사례조사 : 4명(환자2, 조리종사자2 : 상담 조사)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분류	검체건수	검사항목	검사결과
직장도말	유증상자 2명 조리종사자 2명	세균10종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세균성 이질, 비브리오균속,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캄필로박터균)	불검출
		바이러스5종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장내 이데노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사포바이러스)	유증상자 2명 노로바이러스 검출
의심식품	식품 4건	세균9종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0157:H7, 캄필로박터 제주니,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장염비브리오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적 합
환경검체	없음		

III 결론

- 원인조사반 결론(주관과 결론)
 -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된 식품접객업소(토암골옛날막창)에 대하여 원인조사를 한 결과 조리시설 위생상태 양호하였으나, 영업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미 결과로 인하여 확인서 징구.
 - 또한, 환례가 취식한 음식과 동일한 음식류 및 조리방법이 유사한 제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균이 불검출되어 원인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짐.
 -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토암골옛날막창에 대한 식중독 행정처분은 불가능함**
 - 조사의 제한점 : 2015.12.30.(수)에 취식했던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인조사는 더 이상 할 수 없음
- 역학조사반 결론
 - 추정 원인병원체 : 알수 없음
 - 판단근거
 - 환례 2명 및 조리종사자 2명에 대한 직장도말 검사 시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환례 2명에게서 노바이러스 발견됨.

- 추정 감염원 : 알수 없음
- 판단근거 : 조사시 막창, 명이나물이 의심되어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환 경검체에서 세균/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조리종사자 2명에서도 세균/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환례 2명에서도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음. 따라서, 해당업소에서 제공된 음식물과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과의 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됨.
- 조사의 제한점 : 없음

Ⅳ 사후조치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의 위반으로 행정처분 실시(과태료 부과)
- 조리종사자 손씻기 매뉴얼 수칙 준수 지도
-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예정. 끝.